

최근 外換부문 通貨對策과 관련조치

- 한국은행 금융재정과 -

1. 概 要

外貨대출 및 延支給수입의 축소와 外銀支店에 대한 우대 및 차별조치의 축소를 主要内容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금년들어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黒字 전환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通貨공급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금리의 하락과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의 안정화로(표-1 참조) 實負擔금리가 낮아진 外貨대출 및 延支給輸入 등 外貨信用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의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자체자금에 의한 輸入資金지급 및 外債元利金상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외부문의 通貨增發압력을 해외부문 자체내에서 일부 흡수토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2. 關聯措置의 주요내용

(1) 外貨貸出 축소조치

8월21일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외화여수산업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실시키로 한 外貨貸出 축소조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표-2 참조)

첫째, 국민투자기금 및 輸出産業記備金融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國產機械 구입자금을 外貨대출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래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융자기간 3년초과 外貨貸出의 원금상환을 위한 外貨대출 受惠대상업체를 자금조달능력이 미약한 中小企業 및 해운업체 등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융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소요자금 범위내(방위산업용, 중소기업용 및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중소

올해들어 原油가격 및 國際金利의 하락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經常收支가 큰 폭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에 거액의 通貨를 환수해 온 海外부문이 금년에는 通貨撒超부문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앞으로 海外부문에서의 通貨增發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당국은 지난 7월중 무역금융 融資單價를 인하하고, 通貨安定證券발행을 확대하는 등 금융면에서 通貨還收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外換부문에서도 短期資本도입억제를 위하여 延支給輸入期間을 단축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지난 8월 21일에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外貨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기간의 축소와 함께 융자비용을 인하하였으며 延支給輸入대상품목을 축소하였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讓渡性預金證書(CD)업무 취급허용과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 스와프, 限度를 축소하고 外國換銀行의 수입보증금 徵求대상을 期限附輸入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일련의 外換部門 통화대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1〉 주요 國際金融市場金利 및 元貨의 對美달러換率 추이

(단위: 년%, 원)

	1984년말	1985년말	1986. 3월말	6월말	7월말
주요 國際金融市場金利					
런던 銀行間金利 ¹⁾ (LIBOR)	8.75	8.00	7.38	6.88	6.50
싱가포르 銀行間金利 ¹⁾ (SIBOR)	8.75	8.13	7.50	6.94	6.50
元貨의 對美달러換率 ²⁾ (달러當元貨)	8.27.40	890.20	885.20	886.60	885.00

주: 1) 3個月滿期 基準
2) 韓國銀行 集中基準率

〈표-2〉 外貨貸出制度的 主要改正內容

	改 正 前	改 正 後
1. 外貨貸出 融資對象 및 融資比率 조정		
○국산기계 구입자금	100%	폐지
○시설재 수입자금	80%	左同
●중 방위산업, 중소기업 등	100%	"
○계획조건 및 전원개발용 기자재 수입자금	100%	左同
○원유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자금	100%	"
○무역의 지급자금*	100%	80%
●중 해운업체, 중소기업 등		100%
○외화대출 원금상환자금	100%	대상업체 제한(중소기업, 해운업체 등에 한함)
○수출입은행 등과의 협조용자금	100%	左同
2. 原油 및 輸出用原資材 融資期間 단축		
●원 유	120일 이내	90일 이내(1987. 1. 1일 이후)
●수출용원자재	90일 이내 (신설)	60일 이내 (단,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구별없이 30일 이내)
3. 外貨貸出 限度制 실시		한도: 1986. 8. 20일 현재 외화대출잔액 (해외매각분포함) 또는미화 5백만「달러」중 큰 금액
4. 外貨貸出 延滯金利 인하	연20.0%	연19.0%

* 화물운임, 경상운항경비, 용선료, 원양어로경비 및 항만경비, 보험료, 기술용역대가, 특허권 사용료 및「클레임」지급자금

기업에 준하는 기업용 이외의 施設材輸入資金の 경우는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80%이내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운업체 등을 제외한 貿易外支給資金(예: 화물운임, 경상운항경비 등)의 용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인하조정되었다.

셋째, 용자기간도 延支給수입기간과 형평을 맞추어 輸出用原資材 및 原油輸入資金の 용자기간을 종전의 각각

90일 이내 및 1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 및 90일 이내로 단축하되, 標準航海日數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에는 구별없이 용자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한편 韓國銀行은 同日자로 금융기관별 外貨貸出限度制를 실시하기로 하고 外貨대출한도를 1986년 8월20일 현재 外貨貸出殘額(해외매각분 포함)과 美貨 5백만 달러

중 큰 금액으로 하되 韓國銀行총재가 특별히 정한 外貨貸出¹⁾ 취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同限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韓國銀行은 「외화여수신 이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外貨貸出 延滯利率을 종전 年 20% 이내에서 원화대출 延滯金利와 같은 수준인 年 19% 이내로 인하조정하였다.

이상의 개정내용은 8월21일부터 시행하되, 原油수입자금의 外貨貸出 용자기간 단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기로 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동규정 시행일 전에 既融資승인된 외화대출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계속적용토록 하였다.

(2) 延支給輸入 축소조치

財務部는 8월21일 延支給輸入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延支給輸入대상품목을 종전 實行관세율 30% 이하 從價稅品目에서 20% 이하 從價稅品目으로 축소하였다. 다만 輸出用원자재는 관세율에 관계없이 종전대로 延支給輸入對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7월10일 輸出用原資材 및 原油의 延支給수입기간을 종전 90일 이내 및 120일 이내에서 각각 60

일 이내 및 90일 이내로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標準航海日數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의 延支給輸入期間을 구별없이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從價稅品

한편 이와 관련된 조치로 외국환은행장으로 구성되는 外國換專門委員會에서는 종전 一覽拂輸入에만 징구하던 10%의 輸入보증금을 延支給輸入 및 分割支給 수입 등 期限附수입에 대하여도 8월21일부터 징구하되 原油수입에 대하여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3 참조)

(3) 外國銀行 국내지점의 「스와프」限度 축소 및 CD업무 취급허용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8월21일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을 개정하여 外國銀行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9월 1일부터 CD업무 취급을 추가 허용²⁾ 하기로 함으로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外國銀行 국내지점에 대한 CD업무 취급허용과 때를 맞추어 財務部는 8월21일 「외국은행 지점의 「스와프」한도 및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限度中 일반한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

〈표-3〉 延支給輸入 및 輸入保證金制度 改正內容

	改 正 前	改 正 後	施 行 日 字
延支給輸入대상품목 축소	• 실행관세율 30% 이하의 증가세품목	• 실행관세율 20% 이하의 증가세품목	86. 8. 21
延支給輸入期間 단축	• 수출용원자재	• (左 同)	
• 원 유	120일 이내	90일 이내	86. 7. 10
• 수출용원자재	90일 이내	60일 이내	"
	(신설)	(단,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구별없이 30일 이내)	86. 8. 21
輸入保證金 徵求對象 확대	- 一覽拂輸入	- 一覽拂輸入 및 期限附輸入	86. 8. 21(단, 원유수입은 87. 1. 1)

주: 1) 對象資金
 • 1986. 8. 20일 현재 이미 融資承認된 分
 • 中小企業 所要資金
 • 海運業體의 貿易外支給資金 및 元利金償還資金 등

주: 2) 外國銀行에 대하여는 貿易金融 再割引(85. 3. 1) 및 商業어음 再割引(86. 8. 1) 등을 既許容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간내외경제 제1276호(86. 7. 19) 참고

존 外銀支店에 대하여는 현 한도를 인정하되 향후의 이익금 송금유보액과 임의적입금 및 갑기금 증액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限度增額을 인정치 않기로 하였으며, 新規進出 외국은행에 대하여는 스와프 한도를 현행 年 1천 5백만달러로 축소하는 한편, 既存 외국은행이 국내에 신규로 지점을 설치하더라도 추가스와프는 허용치 않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번의 CD업무 취급허용으로 外國銀行 국내지점의 국내금융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外銀支店の CD발행한도를 750 억 원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CD발행액만큼 스와프特別限度

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스와프限度 축소조치는 8월21일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일 현재 이미 관련법규에 의하여 支店新設인가(內認可 포함), 各種基金 增額認可 또는 利益金 처분허가를 받고 스와프한도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外國銀行 국내지점의 외국환 賣却超過(over sold position)에 의한 通貨增發을 막기 위하여 외국환 賣却超過額 한도를 종전대로 5백만달러로 하되 매각 초과분은 先物換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 (한국은행 주간내외경제 86년 제 1282호)

□代替에너지□

石油王國 사우디아라비아가 太陽에너지를 본격 이용하고 있다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太陽 에너지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최근 사우디의 과학기술연구의 중추인 압둘아지즈國王기념과학기술연구도시(KACST)가 설치한 太陽電池式發電모델이 실용화단계에 들어가 사우디合同電力회사(SCECO)를 통해 수도 리야드 근교의 3개 부락에 대해 공급을 개시했다.

작열하는 사막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얻는 태양에너지는 1백 5조Kwh의 發電능력에 상당하

는 量이다. 사우디는 지난 70년대 오일붐이 일고 있을 때 美國에너지省(DOE)과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실용화실험을 실시해 왔다. 현재 3개 부락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플랜트는 KACST와 美國에너지省이 공동개발한 것이다. 발전능력은 50KW級인데, 3백50KW까지 증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石油輸出國機構)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은 同種의 시설중에서도 세계최대 규모라고 한다.

KACST는 西獨의 科學技術省(BMFT)과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美國에너지省과는 별도방식에 의한 에너지의 흡수·伝送시스템의 연구에 착수했다.

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海水淡水化모델도 이미 완성되었고, 오는 95년까지 기존담수화플랜트와 코스트 면에서 경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량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